

평창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58
----------	-----

제출연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 안 제4조

나.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제6조

다.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 안 제7조 ~ 제8조

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 안 제9조 ~ 제10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및 사무의 위탁 : 안 제11조 ~ 제12조

바. 교육·홍보 및 포상 : 안 제14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행정담당관 합의되었음[가족복지과-3626(2026. 1. 22.)]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1. 8.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6-58호, 가족복지과-1016(2026. 1. 7.)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20840(2025. 12. 31.)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20840(2025. 12. 31.)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불수용[가족복지과-2490(2026. 1. 5.)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499(2026. 2. 6.)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3436(2026. 2. 25.)호]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창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환자·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직접 시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할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① 군수는 읍·면사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는 본청 등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포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

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 ④ (생략)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

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에 따른 미첨부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연락처	(033) 330 - 2124